

의안번호	2207051
의 퇴 인	박충권 의원
회 답 일	2025. 1. 17.
추 계 번호	24B637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 (재할당)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u>같은 조 제2항, 제3항 전단, 제4항 및 제5항(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외한다)</u>을 준용하되,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함 ※ 가격경쟁에 의하지 아니하는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 재할당 대가산정 준용규정에서 제3항 후단¹⁾을 삭제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경우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에 대한 직전 할당 대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함(제5항 신설) 1.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 현황, 이용 기간 및 대역폭 2. 이동통신사업을 위한 주파수의 경우 재할당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재할당 대상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방식(국제전기통신연합이 채택한 IMT 표준 기술방식에 따른 구분에 의한다)의 생애 주기에 따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할당 대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재할당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1)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또는 위성망 보호 등(위성주파수 할당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6조 (재할당)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주파수 재할당 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고려 사항 변경(안 제16조)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가격경쟁 없이 재할당할 경우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현행법 제11조제1항²⁾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를 대가를 받고 할당하고 있고, 할당 대가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이 되므로, 개정안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 기준의 변경은 해당 기금 수입의 증감을 가져올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주파수할당은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할당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가를 산정하여 할당할 수 있음

2)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표 1]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할당 현황

(단위: 억원)

시점	대역	대역폭	이용기간	낙찰가(할당대가)	낙찰사업자
‘11년	800MHz	10MHz	‘12.7.~’22.6. (10년)	2,610	KT
	1.8GHz	20MHz	할당일 이후 10년	9,950	SKT
	2.1GHz	20MHz		4,455	LGU+
‘13년	1.8GHz	15MHz	할당일 이후 8년	9,001	KT
	1.8GHz	35MHz		10,500	SKT
	2.6GHz	40MHz		4,788	LGU+
‘16년	1.8GHz	20MHz	할당일~‘26.12.31	4,513	KT
	2.1GHz	20MHz	할당일~‘21.12.05	3,816	LGU+
	2.6GHz	40MHz	할당일~‘26.12.31	9,500	SKT
	2.6GHz	20MHz		3,277	SKT
‘18년	3.5GHz	100MHz	‘18.12.1~10년	12,185	SKT
		100MHz		9,680	KT
		80MHz		8,095	LGU+
	28GHz	800MHz	‘18.12.1~5년	2,073	SKT
		800MHz		2,078	KT
		800MHz		2,072	LGU+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 2] 주파수경매(2011) 시행 이후 정부산정 대가할당 현황

(단위: 억원)

시점	대역	대역폭	이용기간	할당대가	할당사업자	비고
‘16년	2.1GHz	40MHz	5년	5,685	SKT	재할당
		40MHz	5년	5,685	KT	
‘21년(6월)	800MHz	20MHz	5년	2,272	SKT	재할당
		20MHz	5년	2,272	LGU+	
	900MHz	20MHz	5년	1,413	KT	
	1.8GHz	35MHz	5년	5,478	KT	
‘21년(12월)	1.8GHz	35MHz	5년	5,478	SKT	재할당
	2.1GHz	40MHz	5년	4,117	SKT	
		40MHz	5년	4,117	KT	
		40MHz	5년	4,381	LGU+	
	2.6GHz	40MHz	5년	2,169	LGU+	
‘22년	3.5GHz	20MHz	5년	1,521	LGU+	최초할당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법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은 「전파법」 제11조제3항, 「전파법 시행령」 제18조³⁾ 및 같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일·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전파법」 제11조제1항 본문)으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그 밖에 할당대상 주파수의 수요전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으로 할당된 적이 없는 주파수의 경우(「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예상매출액 및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표 3]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 관련 법령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또는 위성망 보호 등(위성주파수 할당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2. 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3.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4. 그 밖에 할당대상 주파수의 수요전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파법 시행령」 [별표 3]

1. 주파수할당 대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2.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의 시장 전체 예상매출액 × x × 무선투자촉진계수 × 주파수 할당률

- 3) 「전파법 시행령」 제18조(재할당)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주파수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의 신청절차 및 그 할당 대가의 산정·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3.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개별 사업자의 연간 실제매출액} \times y$$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 가.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할당으로서 시장 전체 예상매출액 예측이 곤란한 경우
- 나. 주파수할당 공고 시 할당한 전체 주파수 대역폭의 1/2 이상의 대역폭을 새롭게 할당하는 경우
- 다. 동일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과 기술적 특성이 현저히 다른 주파수 대역을 새롭게 할당하는 경우

$$\text{단위 대역폭당 단가} \times \text{주파수 이용기간} \times \text{주파수 대역폭}$$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 현황, 이용 기간 및 대역폭, ▲이동통신사업을 위한 주파수의 경우 재할당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재할당 대상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방식(국제전기통신연합이 채택한 IMT 표준 기술방식에 따른 구분에 의한다)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고려하여 산정할 경우, 현행 기준과 비교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및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한 기준이 사라지고,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 현황, 이용 기간, 대역폭 및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고려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어 재할당 대가 산정액이 변경될 수 있음

[표 4]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 변동(정부 대가 산정)

현행	개정안
[법 제11조제3항] -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	[법 제16조제4항 개정] - 주파수 재할당 시 현행 법 제11조제3항 준용 규정 삭제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3] 1.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	[법 제11조제5항 신설]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아래 사항을 고려 -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u>이용 현황, 이용 기간 및 대역폭</u> - 이동통신사업을 위한 주파수의 경우 재할당이 이

현행	개정안
수할당 대가 - 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u>대역폭</u> - 할당대상 주파수의 <u>이용기간·용도</u> 및 기술방식 - 그 밖에 할당대상 주파수의 수요전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없는 경우 -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루어지는 시점에 재할당 대상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방식(국제전기통신연합이 채택한 IMT 표준 기술방식에 따른 구분에 의한다)의 생애주기에 따른 <u>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u>

자료: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다만, 개정안은 재할당 대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재할당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고려사항 변경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수입 변경 여부 및 규모를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